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2. 변경시행일 : 2024.02.14

3. 정정사항

- 운용전문인력 변경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[[간이]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요구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	아니오	운용전문인력 변경	- 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김정은</u> <신 설>	- 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추연식</u> - 부책임용전문인력 : <u>김정은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-	-	2024.02.14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김정은→ 추연식), 부책임용전문인력 신설 (김정은)
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운용전문인력 변경	- 책임운용전문인력(<u>김정은</u>) <신 설>	- 책임운용전문인력(<u>추연식</u>) - 부책임용전문인력(<u>김정은</u>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아니오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분리과세한도] -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 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-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)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분리과세한도] - 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 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- 연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선택가능 ※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
1. 투자자의 권리 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아니오	주식 추가	<신 설>	※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 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사유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 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

				<p>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
--	--	--	--	---

<끝>.